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3일  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 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주민의 건강생활과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증진센터와 건강리더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정비(안 제1조)
- 건강리더 정의(안 제2조제5호)
- 건강증진센터 정의 및 설치 등(안 제2조제6호 신설, 안 제15조 및 제16조)
-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(안 제6조제2항)

-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건강증진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(안 제6조제3항)
- 건강증진센터 보조 및 지원(안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신설)
- 건강리더의 양성(안 제17조 신설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주민의 건강생활과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증진센터와 건강리더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 - 안 제2조에서는 ‘건강리더’와 ‘건강증진센터’의 정의에 대하여
  -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
  - 안 제15조에서는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수행 사업에 대하여
  - 안 제16조에서는 건강증진센터의 비용 보조 및 물품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
  - 안 제17조에서는 건강리더 양성 교육비 및 활동비 지원 근거에 대해 규정함
-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체력증진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리더 양성 및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체력인증센터를 건강증진센터로 명칭 변경하며,
-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구 지원 및 우수 참여자에 대한 경품 지급 등을 통해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임
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 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